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명래 (환경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 관측 장비 제작·수입·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,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6612호, 2019.11.26. 공포, 2020. 11.2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미 검정 관측 장비 사용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(안 별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0. 00 ~ 00. 00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 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진 관련 관측 장비를 관측기관의 관측 용도로 제공한 경우	법 제30조제1항	300	500	1,000
나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30조제2항	150	250	500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지진화산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81-0763